

부산광역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. 2. 25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1995. 2. 15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5. 2. 20

다. 상 정 일 자 : 제 40회 사하구의회 (임시회)

제 1 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5. 2. 24)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계장 김진문)

가. 제안이유

○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미지정으로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가 비효율적임

○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관직을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본 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시행 주관부서와 일원화 시킴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

징수관, 경리관, 지출원, 출납원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은 지방 재정법 제 1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별도의 시행규칙에 의거 회계관직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의결